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3.12.06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(제89조, 제92조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(제81조, 제93조, 제223조, 제269조)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023.02.20 시행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제59조의3, 2023.01.01 시행)

4. 효력발생일 : 2024.01.16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9 조 개정 반영 (21.10.21)	② 신탁업자는 --- 감시업무, <추가>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---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 43 조(투자신탁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3 조 개정 반영 (2022.08.30)	①-----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3.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 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	①-----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3.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
제 48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자본시장법 제 89 조 1 항 2 호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)	② 집합투자업자는 ---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추가>	② 집합투자업자는 ---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.</u>)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 위험 등급	설정 후 3 년 경과로 위험 등급 산정 기준 문구 변경	㈜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</u>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㈜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</u> 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업데이트 및 연평균수익률 주석추가	- <추가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 3)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 최근 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,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가. 운용전문인력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폐지 (23.05.16) 및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문구 보완	② 채권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---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---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③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---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--- 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 다음 각 호의 --- 상기⑤~⑨의 ---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	② 채권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---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삭제> 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---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③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--- 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 다음 각 호의 --- 상기⑤~⑨의 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 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. 주 1) 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 할 수 있음 (가)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 수료 수익을 추구 (나)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 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 증권의 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 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 음
가. 투자대상			
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 영 (2023.02.20 시행) 증권대차거래 의 목적 기재	<주석 신설>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폐지 (23.05.16) 및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문구 보완	② 동일종목투자(예외) 나. 지방채증권, --- 또는 어음,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으로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---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--- 상기②~⑤의 ---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	② 동일종목투자(예외) 나. 지방채증권, --- 또는 어음, <삭제>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으로서 <삭제>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---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--- 상기②~⑤의 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 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.
나. 투자제한			
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			
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 <p>(2023.02.20 시행)</p>	<p><신설></p>	<p>증권 대차거래위험</p> <p>증권 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	--
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설정 후 3년 경과로 위험등급산정 기준 변경</p>	<p>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. 설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, 이 때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 <p>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 등급 중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p> <p>위험등급 분류는 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743 954 1809"> <thead> <tr> <th>위험등급</th> <th>분류기준</th> <th>상세설명(예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우 높은 위험</td> <td>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높은 위험</td> <td>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소 높은 위험</td> <td>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통 위험</td> <td>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낮은 위험</td> <td>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우 낮은 위험</td> <td>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. “고위험자산”은 주식, 상품(Commodity)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. “중위험자산”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 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</p>	위험등급	분류기준	상세설명(예시)	1	매우 높은 위험	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2	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3	다소 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4	보통 위험	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5	낮은 위험	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6	매우 낮은 위험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<p>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 표준편차)은 18.03%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<삭제></p>
위험등급	분류기준	상세설명(예시)																						
1	매우 높은 위험	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2	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3	다소 높은 위험	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4	보통 위험	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5	낮은 위험	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6	매우 낮은 위험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							

		<p>4.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여부·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</p> <p>5.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·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</p> <p><신설></p>	<p>■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변경일</th> <th>위험 등급</th> <th>변경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4. 01.00</td> <td>2등급</td> <td>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변경일	위험 등급	변경사유	2024. 01.00	2등급	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										
변경일	위험 등급	변경사유																	
2024. 01.00	2등급	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																	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 <p><주석신설>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 <p>주 1) 위 예시는 투자자가 1,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·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.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, 판매 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·비용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. 그러나,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,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주 2) 종류 A 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종류 A-e 와 종류 C-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 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주 3) [종류 A, 종류 A-e, 종류 A-G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[납입금액의 1.0%, 납입금액의 0.5% 납입금액의 0.7%]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 4) [종류 S] 수익증권은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은 감소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소득세법 제 59 조의 3(연금저축세액 공제) 개정 사항 반영 (2023.01.01 시행)</p>	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-P, C-Pe, S-P 가입자에 한함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요건</td> 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</td> </tr> <tr> <td>수령요건</td> <td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td> </tr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	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	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-P, C-Pe, S-P 가입자에 한함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요건</td> 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연 1,800 만원 2.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</td> </tr> <tr> <td>수령요건</td> <td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td> </tr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연 1,800 만원 2.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	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세액공제	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									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연 1,800 만원 2.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									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			

		<p>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	<p>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]</p>
	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 이하인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 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60%
	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(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)	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(공적연금소득 제외)으로 분리과세 -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-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	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)
	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(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	해지가산세	없음	해지가산세 없음
	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	부득이한 연금외 수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
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<p>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</p>			

		<p>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(이하“납입증명서”라 한다)를 발급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.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965 91 1117 515">영사유</td> <td data-bbox="1117 91 1520 51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선고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65 515 1117 616"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</td> <td data-bbox="1117 515 1520 616"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65 616 1117 683">연금계좌 승계</td> <td data-bbox="1117 616 1520 683">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</td> </tr> </table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,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영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선고 	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	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
영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선고 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								
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Class C-P2(퇴직연금), C-P2e(퇴직연금), Class S-P2(퇴직연금) 가입자</p>	<p>소득세법 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개정 사항 반영 (2023.01.01 시행)</p>	<p>①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</p>	<p>①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<삭제>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</p>						

		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	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업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3.02.20 시행)	- <신설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 2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. (발생내역 없음) (주 3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. (발생내역 없음) <주식의 매매회전율> <표 1>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표 2>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 및 연평균수익률 주석추가	- <추가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3)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, 기재하지 않습니다.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9 조 개정 사항	(1) 주요업무 <신설> 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▶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/ --- /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항	(1) 주요업무 -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▶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/ --- /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[임의해지]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3 조 개정 반영 및 문구 보완</p>	<p>집합투자업자는---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집합투자업자는---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(1) <u>수익자</u>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(2)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(3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(4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2 조 개정 사항 반영 (2022.08.30 시행)</p>	<p>● <추가>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-----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	<p>● <u>법 제 230 조에 따른</u>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-----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	<p>자본시장법 제 92 조 개정 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</p> <p>및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 조 개정 반영 (2022.08.30 시행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----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추가></p> <p>8)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)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----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.</u>)</p> <p>8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 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9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

<표1>

<주식의 매매회전율>

(단위 : 백만원, 주, %)

주식매수		주식매도		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(B)	매매회전율(A/B)	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
수량	금액	수량	금액(A)			
-	-	-	-	-	-	31.92

(주1)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)을 의미하며,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.

<표2>

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거래 금액(A)	당기 거래비용		거래 금액(A)	전기 거래비용	
		금액(B)	거래비용 비율(B/A)		금액(B)	거래비용 비율(B/A)
주식	-	-	-	-	-	-
주식 이외의 증권(채권 등)	-	-	-	-	-	-
부동산	-	-	-	-	-	-
장내파생상품	-	-	-	-	-	-
장외파생상품	-	-	-	-	-	-
합 계	-	-	-	-	-	-

(주1)거래비용은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(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)은 생략 가능합니다.